

#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정관

2023.9.22.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이름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이하 "단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성소수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 단위의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상시 사무 공간이 불필요하다고 임원이 판단하는 경우, 특정 사무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소수자의 인권 및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상담, 법률, 교육 등 제반 사업
2. 성소수자 인권 단체와의 각종 교류 사업
3.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명칭)** 이 단체의 회원은 동네주민으로 부른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존 회원 2인의 추천을 받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회원의 권리, 의무,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회원의 권리)와 제8조(회원의 의무)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단체의 임원을 포함하며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이 단체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모임을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총회를 통해 활동을 연 1회 공유한다.

③ 회원은 단체에서 진행하는 상담, 교육, 집회, 기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등의 의결사항 이행
3. 매월 10,000원 이상의 회비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임원에게 탈퇴 의사와 사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회원의 탈퇴 의사와 사유를 확인한 임원은 30일 이내에 해당 회원을 탈퇴 처리해야 한다. 단, 해당 회원의 탈퇴가 공동체 가치에 중차대한 위협이나 손해를 끼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임원은 이를 근거로 회원의 탈퇴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④ 회원을 제명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제명 등 여타의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가입비 등에 대한 환급 등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단체의 임원은 대표 및 부대표, 운영위원 2인 이상 10인 이하의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지원자를 우선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원 과반의 동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으며, 단체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는 손해 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정관 제2조에 해당하는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 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1월 이상의 연락 두절, 고의적 문서 파기 등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 본인이 문서에 의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경우, 사퇴 의사를 문서로 표명한 당일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일 30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총회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운영위원의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를 운영·관리하며 단체 활동에 법적·회계적 책임을 진다.

##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된다.

②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연간 활동과 운영 사항을 임원을 포함한 활동 회원이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둔다.

③ 총회의 주재는 임원이 맡는다. 단, 임원이 전원 부재하는 경우, 총회 참석자 간 투표를 통해 주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정기 총회의 소집)**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분기에 임원이 소집하여 진행한다.

② 임원은 문자 등을 통해 활동 회원에게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정기 총회의 개요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 총회의 소집)** ① 임원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현 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현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단, 임원이 전원 부재하거나 소집권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회원을 대표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의결한다.

1.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결산에 관한 사항
5. 활동 결과 보고 및 활동 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제19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현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20조(의결권의 위임행사)** ① 회원은 타 회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1인의 의결권만을 위임받을 수 있다.

③ 대리인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임의사를 임원에게 전해야 한다.

**제21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회계

**제22조(재원)**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 회비
2. 후원금
3. 기타

**제23조(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회계 공개)** 연간 회비 수입 및 집행 내역을 모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 및 업무 수행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차입금 등)** 단체가 예산 외의 자금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27조(단체 해산)** ①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전체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단체 설립 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